

캘리포니아주 사업체 대상 Covid-19 안전 조치 및 적절한 편의 제공 관련 지침



FAQ

캘리포니아 주민이 COVID-19 대유행을 겪게 됨에 따라, 공정 고용 주택국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은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고용, 주거, 의료** 및 본 문서에서 명시하는 대중 서비스 업종에서 COVID-19의 확산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운루 민권법(통칭, Unruh Civil Rights Act)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모든 종류의 사업체가 개인의 생물학적 성별(사회적 성별, 성 정체성, 성적 표현 및 임신 포함), 인종, 피부색, 종교, 혈통, 출신 국적, 장애, 유전적 특성 또는 암 진단 및 암과 관련된 기록 및 이력 등의 건강상의 장애로 정의되는 의학적 상태, 유전자 정보, 혼인 여부, 성적 취향, 시민권, 모국어, 이민 상태, 나이(노인 및 청년 주택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한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와 관련된 경우에만) 또는 기타 개인적 특징에 따라 차별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인종을 이유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청구하는 것은 운루 민권법에 위반되는 행위이며 위반 시 최소 4,000달러 이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법의 취지는 시장에서 불법적인 차별 행위를 제거함으로써 모든 캘리포니아 주민의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DFEH는 운루 민권법을 시행할 권한이 있습니다. 운루 민권법에 따라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자는 불만을 제기하여 DFEH의 조사를 요청하거나 DFEH의 개입 없이 본인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사업체는 운루 민권법 및 기타 해당하는 민권법을 준수함과 동시에 COVID-19와 관련된 가장 최근의 지역, 주 및 연방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아래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DFEH의 답변은 운루 인권법에 근거하며, 마스크나 예방 접종에 관한 지역 또는 주의 지시와 같은 다른 법률에서 정한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DFEH는 답변이 연방 민권법인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제3호 및 1964년의 민권법 제2호에 부합해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현재 공중 보건 정보에 기반하고 있으며 종종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며 운루 인권법에서 시행하는 내용에서 벗어난 권리와 의무를 만들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업체 대상 Covid-19 안전 조치 및 적절한 편의 제공 관련 지침

COVID-19 증상

- 1 | 사업체 내부로의 입장을 허용하기 전에, 사업체는 고객에게 COVID-19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거나/또는 열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객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까? 사업체는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 운루 민권법은 사업체가 합법적인 사업 이익을 제공하는 규정을 가지는 것을 허용합니다. 고객이 사업체 내부에 출입하는 조건으로 COVID-19 증상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면 고객에서 직원 또는 고객 간 전염을 포함한 COVID-19 감염으로부터 직원과 고객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체는 기침, 발열, 미각 상실 또는 후각 상실과 같은 COVID-19 증상이 있는 사람의 출입이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체는 COVID-19 증상의 유무를 언급하지 않거나 체온 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출입이나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체는 직원과 고객을 COVID-19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계획의 일부로 이러한 조치를 하도록 결정하거나 다른 법률을 통해 그러하도록 요구될 수 있지만, 운루 민권법은 사업체가 이러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2 | 사업체는 특정 고객에게만 COVID-19 증상이 있는지 물어보거나, 특정 고객만 체온을 재거나, 혹은 COVID-19 증상이 있는 특정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운루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자라고 생각하는 고객의 체온만 재거나 고열이 있는 특정 해외 국가 출신으로 보이는 고객만 배제하는 사업체는 민권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COVID-19 백신 접종 및 검사

- 3 | 사업체는 입장 진입을 허용하기 전 고객에게 COVID-19 백신 접종 증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사업체는 COVID-19 백신 접종 증명 자료를 보여줄 수 없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 FAQ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루 민권법은 사업체가 COVID-19 감염으로부터 직원과 고객을 보호하는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는 업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FDA가 승인하거나 허가한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고, 고객에게 다른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할지를 결정하거나 다른 법률을 통해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현재로서는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바이러스 전파 위험이 상당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추가적인 예방조치(예: 마스크 착용)를 적용하면 SARS-CoV-2 감염이나 전파 위험이 낮은 상태로 대부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적절한 인원 허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FAQ 8~10을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사업체 대상 Covid-19 안전 조치 및 적절한 편의 제공 관련 지침

- 4 | 사업체가 입장 진입을 허용하기 전에 고객에게 COVID-19에 대한 최근의 음성 판정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까? 사업체는 COVID-19에 대한 음성 판정서를 보여줄 수 없는 사람에게 서비스 제공을 배제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까?**

예, FAQ 1과 3에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인원 허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FAQ 8~10을 참조하십시오.

- 5 | 사업체는 특정 고객에게만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서 및/또는 음성 판정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운루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인종이나 종교 그룹에 속한 개인에게만 음성 판정서나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사업체의 행위는 운루 민권법에 위배됩니다.

마스크

- 6 | 업장 내에 출입하는 조건으로, 사업체는 COVID-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고객에게 마스크나 안면 보호구와 같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는 고객을 배제할 수 있습니까?**

예, FAQ 1과 3에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인원 허용에 대한 중요한 정보는 FAQ 8~10을 참조하십시오. 마스크와 관련된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의 지침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cdph.ca.gov/Programs/CID/DCDC/Pages/COVID-19/guidance-for-face-coverings.aspx.

- 7 | 사업체는 특정 고객에게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운루 민권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신 중이거나 신체장애가 있는 개인에게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사업체는 그것이 선의에서 비롯된 행위라도 운루 민권법에 위배됩니다.

적절한 편의 제공 및 조정 사항

- 8 | COVID-19 대유행 동안 사업체는 장애를 가진 고객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까?**

예. 운루 민권법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업체에 신체장애와 같은 고객의 알려진 장애에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입술 모양이나 표정을 읽으며 의사소통을 하는 청각장애가 있는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매장 직원은 얼굴 하단부를 가리는 마스크 대신 투명한 마스크나 투명한 안면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편의 제공 지침은 FAQ 9를 참조하십시오.

캘리포니아주 사업체 대상 Covid-19 안전 조치 및 적절한 편의 제공 관련 지침

9 | 사업체가 고객에게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서 및 최근 COVID-19 음성 판정서 제시, 마스크 착용 또는 기타 COVID-19 안전 수칙 준수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체는 이러한 안전 수칙 준수가 어려운 장애를 가진 개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나?

간단한 답변: 예,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사업에 막중한 부담을 지우거나, 또는 사업체의 관행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설명: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장애를 가진 개인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 선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본 문서에서 다루는 특정 COVID-19 안전 수칙은 현재의 공중 보건 지침에 비추어 볼 때 사업체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 고객이 COVID-19 백신 접종, 마스크나 기타 얼굴 가리개 착용 및/또는 다른 COVID-19 안전 수칙 준수를 어렵게 하는 장애를 가졌다고 언급하는 경우, 사업체는 고객에게 장애 관련 개인 정보 공유를 요청해서는 안 되며 장애의 존재에 대한 불필요한 질문을 해서도 안 됩니다. 대신, 이러한 단계에서 사업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체는 COVID-19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고객의 진술을 받아들여 합리적인 대안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로 인해 고객이 사업체의 COVID-19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체는 고객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사업체는 직원과 다른 고객을 보호하는 동시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찾기 위해 고객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상호 과정'에 개입할 때, 사업체의 대표는 고객으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적절한 경우, 사업체의 대표는 전화 및 가림막을 사용하거나 COVID-19에 대한 잠재적 노출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객과 이야기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은 각각의 사례에 따라 정합니다. 고려사항에는 사업체의 구조, 근무 중인 직원 수,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 의심스러운 고객의 요구, 다른 고객의 존재 여부 등이 포함됩니다. 다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 슈퍼마켓에서 고객에게 매장 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고, 고객이 장애로 인해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직원이 고객을 위해 장을 보는 동안 고객이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작은 컴퓨터 매장이 손님들에게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데 고객이 장애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전화나 영상 또는 문자로 고객을 응대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 실내 및 실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점에 고객이 입장하려면 COVID-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고, 장애로 인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단순히 고객이 밖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사업체와 고객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한 후에도 합리적으로 고객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가능한 대안이 타인(예: 종업원이나 다른 고객)의 건강이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사업에 막중한 부담을 지우거나, 또는 사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사업체 대상 Covid-19 안전 조치 및 적절한 편의 제공 관련 지침

- 만약 실내로만 운영되는 레스토랑이 모든 손님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지역 조례에 따라 외부에 테이블을 비치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외부 테이블에서 비접종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체가 장애로 백신 접종이 불가능한 고객에게 픽업이나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되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미용실이나 이발소가 모든 고객에게 COVID-19 백신 접종을 요구하거나 가게 안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한다면, 해당 업소는 이발, 머리 땀기, 면도 및 직원과 미접종/마스크 미착용 고객이 가까운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이 직원 및 다른 고객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다는 근거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미접종 고객이 샴푸나 스타일링 제품만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직원이 주문을 접수한 후 고객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동안 외부에서 기다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만약 극장이 모든 이용자에게 COVID-19 예방 접종을 요구하거나 건물 안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극장에서 미접종/마스크 미착용 고객의 입장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극장은 외부에 검사소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현재 이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극장이 미접종/마스크 미착용 고객을 위해 이를 시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과/또는 근본적인 사업의 변화를 초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10 | 사업체가 모든 고객에게 COVID-19에 대한 백신 접종 증거를 제시하거나 다른 COVID-19 안전 수칙 준수를 요구할 할 때, 사업체는 굳건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에게 적절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까?

DFEH는 운루 민권법이 사업체가 고객의 굳건한 종교적 신념에 대해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명확히 공론화된 법원의 판결이나 다른 법률의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DFEH는 사업체의 운영상 편의를 위해, 종교적 이유를 주장하며 COVID-19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다른 COVID-19 안전 수칙을 따르지 않는 고객을 응대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FAQ 9의 지침을 따를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고용 상황에 적용되는 미국 평등고용기회 위원회(EEOC)의 다음 지침은 고객의 종교적인 허용 요청을 마주하는 사업체에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EEOC의 지침은 종교의 정의가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설명하며 고용주에게 낯설 수 있는 믿음, 관행, 의식을 보호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교적 허용에 대한 직원들의 요구는 굳건한 종교적 신념, 관행 또는 준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원이 종교적인 허용을 요청하고, 고용주가 특정 신념, 관행 또는 준수의 진정성이나 종교적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객관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고용주가 추가적인 지원 정보를 요청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원 제기처

공정 고용 주택국

dfeh.ca.gov / 수신자 부담: 800.884.1684 / TTY: 800.700.2320

DFEH는 청각 장애 또는 난청이 있거나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전화 또는 캘리포니아 중계 서비스(California Relay Service, 711)를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또한 상기 연락처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